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에서의 경비·재난 등의 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 종합상황실을 차장 직속으로 개편하면서 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총경에서 경무관으로, 종합상황실 소속 경정 5명의 직급을 총경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지방해양경찰관서 종합상황실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정원 19명(경위 3명, 경사 16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감 3명, 경위 16명)하며, 해양경찰청에 해양 위성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해양경찰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해양경비 업무 인력 476명(경정 4명, 경감 32명, 경위 58명, 경사 122명, 경장 174명, 순경 82명, 9급 4명)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의 정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 해양경찰교육원의 정원 1명(경위 1명),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의 정원 4명(6급 2명, 7급 1명, 9급 1명) 및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정원

17명(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8급 1명)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해양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2. 13.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국제정보국”을 “정보외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기획조정관, 종합상황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대언론”을 각각 “대국민”으로 한다.

제8조제3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해양 경비·재난·치안·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조정에 관한 업무
2. 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
3. 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
4. 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기록·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
5. 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6. 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

7. 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

8. 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

제11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

7. 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

제13조의2의 제목 “(국제정보국)”을 “(정보외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제정보국”을 “정보외사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2항 후단 중 “20명”을 “24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별표 1의 동해해양특수구조대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3의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군산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의 위치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의 동해해양경찰서 및 속초해양경찰서의 위치란 중 “강

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521”을 “518”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423”을 “420”으로 하며, 경무관 “3”을 “4”로, 총경 이하 “415”를 “411”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2,553”을 “12,53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372”를 “11,355”로 하며, 총경 이하 “11,363”을 “11,3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1,181”을 “1,17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69”를 “1,164”로 한다.

별표 6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양경찰청

평가대상 조직

업무	정원
1) 수사국 1개 과	8명
2) 정보외사국 1개 과	4명

별표 6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1) 해양경비업무(지방해양경찰청)	60명
2) 항공단업무(지방해양경찰청)	60명
3) 해양경비업무(지방해양경찰청)	33명
4) 해양안전업무(지방해양경찰청)	404명
5) 형사 요원(지방해양경찰청)	51명
6) 해양오염방제 업무(지방해양경찰청)	41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서해지

방해양경찰청의 군산해양경찰서 및 부안해양경찰서의 위치란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해양경찰청의 정

원 4명(경정 1명, 경감 1명, 경위 1명, 7급 1명)과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의 정원 22명(경위 7명, 경사 4명, 경장 4명, 순경 2명, 6급 2명, 7급 1

명, 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하부조직) ① 해양경찰청에 운영지원과 · 경비국 · 구조안전 국 · 수사국 · <u>국제정보국</u> · 해양 오염방제국 및 장비기술국을 둔 다.	제6조(하부조직) ① ----- ----- ----- <u>정보외사국</u> ----- ----- --.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 고, 차장 밑에 <u>기획조정관</u> 및 감 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② ----- ----- <u>기획조정관</u> , <u>종합</u> <u>상황실장</u> -----.
제7조(대변인) ① (생략)	제7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 여 청장을 보좌한다.	② ----- -----.
1. 주요정책에 관한 <u>대언론</u> 홍 보 계획의 수립 · 조정 및 소 속기관의 <u>대언론</u> 정책홍보 지 원 · 조정	1. ----- <u>대국민</u> -- ----- ----- <u>대국민</u> ----- -----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기획조정관) ① (생략)	제8조(기획조정관) ① (현행과 같 음)
② 삭 제	③ ----- -----.
③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③ ----- -----.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u>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u> <u>제협력업무의 기획 · 지도 및</u>

<신 설>	<u>조정</u> 제8조의2(종합상황실장) ① <u>종합상황실장은 경무관으로 보한다.</u> ② <u>종합상황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u> 1. <u>해양 경비·재난·치안·오염 등의 상황(이하 “해양상황”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조정</u> <u>에 관한 업무</u> 2. <u>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u> 3. <u>해양상황의 진행상황 파악·전달 및 처리</u> 4. <u>해양상황의 피해, 구조 및 대응 현황 등에 대한 파악·기록·통계관리 및 정보 분석</u> 5. <u>국내외 해양상황의 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u> 6. <u>상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보안관리</u> 7. <u>긴급신고전화 운용에 관한 사항</u> 8. <u>국제조난 안전통신 업무에 관한 사항</u> 제11조(경비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해양상황의 처리와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및 지도</u> 7. <u>해양상황의 접수·처리·전파 및 보고</u> 8. ~ 11. (생략) 제13조의2(국제정보국) ① <u>국제정보국에 국장 1명을 둔다.</u> 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국제협력업무의 기획·지도 및 조정</u> 제15조(장비기술국) ①·② (생략)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u>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u> 7. <u>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u>	③ ----- --. 1. ~ 5. (현행과 같음) 6. <u>해양항공 업무 관련 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업무</u> 7. <u>해양에서의 항공기 사고조사 및 원인분석</u> 8. ~ 11.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정보외사국) ① <u>정보외사국-----.</u>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5조(장비기술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	--	---	---

8.·9. (생략)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u>20명</u>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8.·9. (현행과 같음) 제35조(해양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u>24명</u>----- ----- ----- ----- ----- ----- ----- ----- ----- -----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19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생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521</u>	<u>518</u>	-3
경찰공무원 계	<u>423</u>	<u>420</u>	-3
•	•	•	
•	•	•	
경무관	<u>3</u>	<u>4</u>	+1
총경 이하	<u>415</u>	<u>411</u>	-4
•	•	•	
•	•	•	

[별표 5]

해양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6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2,553</u>	<u>12,531</u>	-22
경찰공무원 계	<u>11,372</u>	<u>11,355</u>	-17
·	·	·	
·	·	·	
총경 이하	<u>11,363</u>	<u>11,346</u>	-17
일반직 계	<u>1,181</u>	<u>1,176</u>	-5
3급 또는 4급 이하	<u>1,169</u>	<u>1,164</u>	-5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5